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16 발의연월일: 2023. 7. 27.

발 의 자:서동용・민형배・정성호

이병훈 · 송옥주 · 김정호

김철민 · 송재호 · 최인호

김홍걸 • 윤재갑 • 김용민

유기홍 • 문정복 • 김태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있음.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보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사는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 12 및 제60조의 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352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7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3(제60조의12 및 제6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교육활동 보호

- 제60조의1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① 교육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6항에 따라 수사 기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례판단위원회 위원은 교육·법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사례판단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례판단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의견 제출을 요청한 수

사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13(아동학대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60조의 12제1항에 따른 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조사,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교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한다.
 - ② 전담공무원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 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조직의 운영,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u><신 설></u>	제4장의3 교육활동 보호 제60조의12(아동학대사례판단위 원회) ① 교육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 6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해 당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 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례판단위원회 위원은 교육・법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신 설>

④ 사례판단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의견 제출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13(아동학대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60조의12제1항에 따른 사례 판단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조사,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교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조직의 운영,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